

의안번호	2205519
의 퇴 인	박덕흠의원
회 답 일	2024. 12. 6.
추 계 번호	24B505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신설(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 토지에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제2항)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u>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u> 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의무규정
2	안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가목부터 라목까지 신설(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약의 의제된 토지 중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기본직불금 지급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약의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함). 다만, <u>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지역·단지로 지정되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약의 의제된 토지 중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u>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된 토지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신설(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 토지에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가목부터 라목까지 신설(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된 토지 중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기본직불금 지급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면적에 대하여 토지보상 전까지 지급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해당 농지에 대한 예산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도입('20)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 대한 예산은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농지의 산업단지 편입 등을 가정하여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개정안은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에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농지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참고로 최근 3년간 농식품부 농지전용 협의 면적은 연평균 1,830ha, 단위면적당 기본직불금 평균지급액은 207만원/ha 규모임¹⁾ ※ 공익기능증진직불제도 도입 이후 결산에 따른 불용액은 2022년 573억원, 2023년 2,188억원 등이며, 최근 3년간 농지전용 협의의 평균 면적에 대한 기본직불금 지급 예상 규모(약 38억원(= 1,830ha × 207만원/ha))를 상회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 이 중 산업단지 편입 면적 또는 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직불금 미지급 면적 및 금액은 별도 산출하기 어려움(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 협의 면적 현황: 2021~2023년> <table><tr><th>구 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평균</th></tr><tr><td>농식품부 농지전용 협의 면적(ha)</td><td>1,709</td><td>1,283</td><td>2,498</td><td>1,830</td></tr><tr><td>면적당 기본직불금 평균 지급액 (만원/ha)</td><td>206</td><td>207</td><td>208</td><td>207</td></tr></table> 주: 이 중 산업단지 편입 면적 또는 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직불금 미지급 면적 및 금액은 별도 산출하기 어려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결산 현황: 2020~2023년 (단위: 백만원, %)> <table><tr><th>구분</th><th>계획액 (A)</th><th>집행액 (B)</th><th>실집행액 (C)</th><th>불용액 (D=A-B)</th><th>집행률 (B/A)</th><th>실집행률 (C/A)</th><th>불용률 (D/A)</th></tr><tr><td>2020</td><td>2,360,984</td><td>2,358,736</td><td>2,355,432</td><td>2,248</td><td>99.9</td><td>99.8</td><td>0.1</td></tr><tr><td>2021</td><td>2,360,984</td><td>2,339,968</td><td>2,306,947</td><td>21,016</td><td>99.1</td><td>97.7</td><td>0.9</td></tr><tr><td>2022</td><td>2,360,984</td><td>2,303,728</td><td>2,262,452</td><td>57,256</td><td>97.6</td><td>95.8</td><td>2.4</td></tr><tr><td>2023</td><td>2,726,884</td><td>2,508,129</td><td>2,433,224</td><td>218,755</td><td>92.0</td><td>89.2</td><td>8.0</td></tr></table> 주: 집행률 및 실집행률은 계획액 대비 집행액 및 실집행액으로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2024.7.8.에서 재인용(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각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농식품부 농지전용 협의 면적(ha)	1,709	1,283	2,498	1,830	면적당 기본직불금 평균 지급액 (만원/ha)	206	207	208	207	구분	계획액 (A)	집행액 (B)	실집행액 (C)	불용액 (D=A-B)	집행률 (B/A)	실집행률 (C/A)	불용률 (D/A)	2020	2,360,984	2,358,736	2,355,432	2,248	99.9	99.8	0.1	2021	2,360,984	2,339,968	2,306,947	21,016	99.1	97.7	0.9	2022	2,360,984	2,303,728	2,262,452	57,256	97.6	95.8	2.4	2023	2,726,884	2,508,129	2,433,224	218,755	92.0	89.2	8.0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농식품부 농지전용 협의 면적(ha)	1,709	1,283	2,498	1,830																																																					
면적당 기본직불금 평균 지급액 (만원/ha)	206	207	208	207																																																					
구분	계획액 (A)	집행액 (B)	실집행액 (C)	불용액 (D=A-B)	집행률 (B/A)	실집행률 (C/A)	불용률 (D/A)																																																		
2020	2,360,984	2,358,736	2,355,432	2,248	99.9	99.8	0.1																																																		
2021	2,360,984	2,339,968	2,306,947	21,016	99.1	97.7	0.9																																																		
2022	2,360,984	2,303,728	2,262,452	57,256	97.6	95.8	2.4																																																		
2023	2,726,884	2,508,129	2,433,224	218,755	92.0	89.2	8.0																																																		

2. 상세 사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 토지에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안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신설)

□ 현행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에 대해서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

2) 법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참고자료] 농업직불제 개요 참고

- 공익직불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분
 - (기본직접지불제도)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표 1] 기본직접지불금 지원단가

단계 \ 구간	소농직불금 (0.5ha 이하)	면적직불금(만원/ha)		
		1구간 (0.1~2ha)	2구간 (2~6ha)	3구간 (6~30ha)
논·밭 진흥	130만원/가구	205	197	189
논 비진흥		178	170	162
밭 비진흥		134	117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공익직불제란
<<https://www.mafra.go.kr/gong/index.do>>

- (선택직접지불제도) 기존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에 논활용직불제(개편전 논이모작직불)를 포함하고 제도 운영·단가 등을 기존처럼 유지

※ [참고자료 1] 농업직불제 개요,

[참고자료 2]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요건 참고

- 개정안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대) 「하천법」 제33조제1항³⁾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⁴⁾을 받은 농산

3)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

물을 재배하는 경우

○ 추가재정소요 = $\sum_t (\text{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지급액})_t$

$$= \sum_t (\text{신규 대상자의 농지면적}_{i,j,t} \times \text{면적구간별 지급단가}_{i,j,t})$$

- 이때 t 는 추계기간 5년
- 신규 대상자: ①하천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②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i 는 구간: $i=1$ 일 때 소농직불금 대상 구간(0.5ha 이하)
 $i=2$ 일 때 1구간(0.1~2ha),
 $i=3$ 일 때 2구간(2~6ha),
 $i=4$ 일 때 4구간(6~30ha)
- j 는 논·밭 유형: $j=1$ 일 때 논·밭 농업진흥지역,
 $j=2$ 일 때 논 진흥지역 밖,
 $j=3$ 일 때 밭 진흥지역 밖

□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면적 및 해당 농지의 기본직불금 지급 구간, 농업인 수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제3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농업직불제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2019년 이전 농업직불제

종 류	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
쌀고정직불제 (’05~’19) (논농업직불: ’01~’04)	○ 지원목적: 쌀 생산량·가격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소득 지원 ○ 대상농지: ’98~’00년 사이에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타작물 재배, 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 ○ 지원단가: 평균 100만원/ha
쌀변동직불제 (’05~’19) (쌀소득보전: ’03~’04)	○ 지원목적: 쌀 농가에 직불금 지급하여 쌀값하락으로부터 농업인 소득감소분 보전 ○ 대상농지: 고정직불금 대상농지 중 논에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는 농지 ○ 지원대상: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 ○ 지원단가: (목표가격(214,000원/80kg)-수확기쌀값)×0.85-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04~’19)	○ 지원목적: 농업생산성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해 직불금 지원 ○ 대상지역: 읍·면지역은 읍·면의 경지율이 22%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의 모든 법정리 ○ 대상농지: ’03~’05년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 ○ 단가: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국고80%, 지방비20%)
밭농업 직불제 (’12~’19)	<밭고정> ○ 지원목적: 밭 이용 농지에 직불금 지급하여 밭농가 소득보전 및 자급률 제고 ○ 대상농지: 지목과 상관없이 ’12~’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대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단가: 밭고정 55만원/ha <논이모작(논활용직불)> ○ 지원목적: 6월 말까지 수확 가능한 이모작 품목 재배시 직불금 지급하여 자급률 제고 ○ 대상농지: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논과 ’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 지원대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단가: 논이모작 50만원/ha
친환경 농업직불제 (’99~)	○ 지원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가 대상(유기 5년, 무농약 3년) ○ 논 지원단가: 유기 70만원/ha, 무농약 50, 유기지속 35(’18년~) ○ 밭 지원단가: (과수)유기 140만원/ha, 무농약 120, 유기지속 70(’18년~) (채소·특작기타)유기 130만원/ha, 무농약 110, 유기지속 65(’18년~)
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 (’09~)	○ 지원목적: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지원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단가: 한우170 천원/두, 돼지16 천원/두, 육계200 원/마리, 젖소(우유) 50원/L, 산란계(계란) 10원/개, 오리 40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등
경관보전직불제 (’05~)	○ 지원목적: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촌경관 조성 ○ 지원대상: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지원단가: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ha, 준경관초지: 45/ha
경영이양직불제 (’97~)	○ 지원목적: 65~74세 농업인 농지 이양으로 고령은퇴농 소득안정 도모 ○ 대상농지: 진흥지역 내 전·답·과수원, 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된 전·답·과수원 등으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 지원대상: 65~74세,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농업인 ○ 지원단가(지급기간): 매도 330만원/ha, 임대 250만원/ha(2~10년 지급)
영농정착지원사업 (’18~)	○ 지원목적: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창업과 초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 지원 ○ 지원대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 ○ 지원금액: 선발인원에게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18~’22: 100만원)) 지원

□ 2020년 이후 농업직불제

종 류 ('24년 예산)		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 + 지급현황('23)																								
공익 직불제 ('20~ (29,090 억원)	기본형 직불제 (26,335억원)	<기본형 직불제, 26,335억원('24)> ○ 지원목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대상농지: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등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 지원대상: ①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16~'19년 기존 직불금 수령자,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천 5백만원 이상) ○ 지원단가 <table><tr><th rowspan="2">구간 단계</th><th rowspan="2">소농직불금 (0.5ha 이하)</th><th colspan="3">면적직불금(만원/ha)</th></tr><tr><th>0.1~2ha</th><th>2~6ha</th><th>6~30ha</th></tr><tr><td>논·밭 진흥</td><td rowspan="3">130만원/가구</td><td>205</td><td>197</td><td>189</td></tr><tr><td>논 비진흥</td><td>178</td><td>170</td><td>162</td></tr><tr><td>밭 비진흥</td><td>134</td><td>117</td><td>100</td></tr></table> ○ 지급건수('23): 1,285천건(소농 490, 면적 795) ○ 지급면적('23): 1,109천ha(소농 153, 면적 956) ○ 지급액('23): 23,018억원(소농 5,875, 면적 17,143)				구간 단계	소농직불금 (0.5ha 이하)	면적직불금(만원/ha)			0.1~2ha	2~6ha	6~30ha	논·밭 진흥	130만원/가구	205	197	189	논 비진흥	178	170	162	밭 비진흥	134	117	100
	구간 단계	소농직불금 (0.5ha 이하)	면적직불금(만원/ha)																							
			0.1~2ha	2~6ha	6~30ha																					
논·밭 진흥	130만원/가구	205	197	189																						
논 비진흥		178	170	162																						
밭 비진흥		134	117	100																						
사업비· 이행점검비 (388억원)	<사업비: 104억원, 이행점검비: 284억원('24)> ○ 지원목적: ① 공익직불 신청·접수·지급에 필요한 지자체 행정경비, 홍보, 연구용역비 등 ②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 ○ 집행액('23): (사업비) 116, (이행점검비) 249																									
	선택형 직불제 (2,367억원)	<전략작물직불, 1,865억원('24), ~'22까지 논활용직불> ○ 지원목적: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차등 지원 * (동계작물 단일재배) 1ha당 50만원, (하계작물 단일재배) 가루쌀·두류 1ha당 200만원, 하계조사료 1ha당 430만원, 옥수수 100 (전략작물 이모작 재배) 동계 밀·동계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논콩·가루쌀 이모작하는 경우 1ha당 100만원 추가 지급(350만원/ha) ○ '23년 지급건수-면적-지급액: 73천건-125천ha-1,080억원 <친환경농업직불제, 228억원('24)> ○ 지급건수('23): 33천건 ○ 지급면적('23): 33천ha ○ 지급액('23): 210억원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16억원('24)> ○ 지급건수('23): 21호 ○ 지급액('23): 4억원 <경관보전직불제, 168억원('24)> ○ 지급건수('23): 11천건 ○ 지급면적('23): 13천ha ○ 지급액('23): 85억원 <탄소중립프로그램, 90억원('24)> ○ '24년 신규도입																								

□ 최근 3년(2021~2023년)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최근 3년간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021~2023년>

(단위: 천ha, 천건, 억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기본형 직불제	1,083	1,122	22,268	1,058	1,129	21,943	1,109	1,285	23,018
－ 소농직불	146	450	5,399	144	450	5,405	153	490	5,875
－ 면적직불	937	672	16,869	914	679	16,538	956	795	17,143
선택형 직불제	143	94	819	131	96	741	169	119	1,379
－ 친환경직불 (농업+축산)	36	36	255	33	35	228	33	33 (축산 21건)	214
－ 경관보전직불	14	11	91	13	11	86	11	11	85
－ 전략작물직불 (~'22 논활용직불)	93	47	473	85	50	427	125	73	1,0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요건⁵⁾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요건	
	농지	농업인
공통사항	▶ 과거 쌀직불('98~'00), 밭직불('12~'14), 조건불리직불(2003~2005) 중 어느 하나의 직불 및 기간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지 ※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법인 포함) • (기존 수령자) '16년 이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또는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의 정책 요건 해당자 • (신규 신청자)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m²(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 4,500만원) 이상
소농직불	▶ 농가 당 신청 가능면적: 0.1ha~0.5ha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①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 농가당 120만원 일괄 지급 (☞ 2024년부터 130만원으로 상향)	
면적직불	▶ 농가 당 신청 가능면적: 0.5ha~30ha(법인 0.5ha~50ha)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 ▶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 ▶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	

5)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2023. 2. 23.